신용대출을 받기 전 미리 알아두세요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상품은 담보대출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신용대출은 고객님의 소득, 보유 대출 및 연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한도와 금리가 정해지는 상품이에 요. 담보대출처럼 부동산과 같은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대출 절차가 간편하지만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아 같은 금액을 신용대출로 빌리게 되면 이자가 더 높을 수 있어요.**

① 사잇돌대출, 비상금대출 등 일부 대출 상품은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운용합니다.

대출을 받는 것 만으로도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신용점수가 하락하면 대출 연장시 금리가 높아지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등 토스뱅크 및 다른 금융회사와의 금 융거래 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8.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를 확인해주세요.

금리 변동주기에 따라 대출기간 중에도 금리가 변동될 수 있어요

대출 신청시 선택한 금리 변동주기에 따라 대출 기간에도 금리가 바뀔 수 있어요.

만약, 기준금리가 높아진다면 원래 약정한 금리보다 높아져 이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한도 늘리기 (증액), 대출 연장의 경우에도 신청한 시점의 기준 금리와 신용 상태에 따라 대출 금리가 바뀔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4. 대출금리 산정방식 및 결정요인], [9. 기타 유의사항], "대출거래약정서 제 1 조" 를 확인해주세요.

중도상환해약금 없이 자유롭게 대출금을 갚을 수 있어요

대출이 끝나기 전 자금이 생길 때마다 대출금을 갚고 싶은 경우, 휴일에 관계없이 토스앱으로 갚을 수 있어요. 갚은 후에는 취소 할 수 없으니 유의해주세요. **토스뱅크 신용대출은 원하는 때에 갚아도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2. 수수료 등 비용부담]를 확인해주세요.

대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대출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주세요

연장을 신청했을때. 신청시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갚아야 할 수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7.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를 확인해주세요.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해요 꼭 유의해주세요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못 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내야 해요. 연체가 너무 길어지면 약관에 따라 대출 원금 전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내야할 수 있어요. 또한 연체했다는 정보가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되서 다른 금융활동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대출원금이 1억원인 경우, 최대 월 연체이자 145만원 발생 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6.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확인해 주세요.

궁금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민원·상담은 인터넷 홈페이지(tossbank.com),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해주세요. 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 e-금융민 원센터(www.fcsc.kr) 또는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에 신청할 수 있어요.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로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제공됩니다.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본인은 토스뱅크 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

고객확인

1. 상품 개요 및 특성

상품명 금리적용방식

대출신청금액 대출기간 개월

적용예정금리 % 휴일 대출상한 가능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상품 여부 중도상환해약금 부과 여부

※ 체크박스가 있는 구분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상품에 해당되는 경우, ■로 표시됩니다.

※ 대출계약 체결로 고객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대출금액과 이자. 수수료 등을 합산한 총액**이며, 정확한 금액은 **대출심사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 □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액 ×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대출만기까지 3개월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예시) 중도상환해약금률 1.4%, 대출금액 1억원을 대출기간 3년(1,095일)으로 약정 후, 대출기간 종료일까지 남은 일자가 365일인 경우 상환시에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

1억원 × 1.4% × 365 / 1,095 = 466,666 원

※ 중도상환해약금이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다만,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됩니다.

□ 인지세 : 원

 \cdot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15만원	35만원
	고객부담	-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은행부담	-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기타수수료** : 항목 금액 원, 수수료율 %

□ **기타비용** : 항목 금액 원

-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비용의 부담)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출금액과 이자에 더하여 은행이 부담한 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과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는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46조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금융소비자의 권리

가, 대출계약 철회권

-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 대출 계약철회를 위해서는 **모바일앱으로 은행에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u>대출금</u>과 이에 대한 <u>이자,</u> 대출과 관련하여 <u>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u>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해약금이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나, 금리인하요구권

-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상품 여부: 🔲 대상 🔲 비대상
-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u>금리인하를 요</u> 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 조의2)를 말합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은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의 개선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전 자적 방식으로 제출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의 변동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고, 심사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즉시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다.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라. 자료열람요구권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신용평가대응권

- ·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자동화평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삭제·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의2)를 말합니다.
- * 은행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

- ·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은행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 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4. 대출금리 산정방식 및 결정요인

ㆍ대출금리 산정방식은 크게 고정금리, 변동금리로 구분되며, 고객님이 신청하신 상품은 [□ 고정금리, □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 · 대출금리 결정(변동) 요인
- **대출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원가요소와 목표수익률(마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변동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표시**됩니다.

	♣ ② 가산금리								
① 대출 기준금리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예상 손실율	위험자본 비용율	업무 원가	법적 비용	목표 수익률	상품감면금리, 시스템감면금리 등	= ③ 최종 금리
자금조	자금조달금리 • 리스크관리비용 등 원가			⊕ 마진	⊕ ♠ 가감조정금리	= 최종금리			

- · **대출 기준금리**는 변동금리대출의 대출금리 변동 시 기준이 되는 금리 등을 의미하며, 은행은 금융채, COFIX 등 공표되는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취급에 따른 원가 비용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말하며, 아래 등과 같이 구성됩니다.
 - 리스크프리미엄: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의 차이 등
 - **유동성프리미엄**: 자금 재조달의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관리비용 등
 - 예상손실율: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 등에 따른 평균 예상 손실비용 등
 - 위험자본비용율: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자본의 기회비용 등
 - 업무원가율: 대출취급에 따른 은행의 인건비·전산처리비용 등
 - 법적비용 : 보증기관 출연료와 교육세 등 각종 세금 및 준조세성 부담금
 - 목표수익율 : 은행이 설정하는 수익률
 - 가감조정금리 :상품자동감면금리, 시스템감면금리 등

※ 변동금리 예시

- 금융채연동금리: 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가 고시하는「재산정주기 해당 기간의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3개월, 6개월, 1년, 5년)」종가의 단순평균값에 가산이율을 더하여 변경됩니다.
- COFIX연동금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선택한 재산정 주기에 따라 변경됩니다.
- 수신금리 연동금리: 예·적금담보대출의 담보 예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예·적금 금리가 변동되는 경우, 이에 연동되어 변경됩니다.
- 국고채 연동금리: 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가 고시하는 「재산정주기 해당 기간의 국고채권 유통수익률(5년)」의 단순평균값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변경됩니다.
-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우대금리 등)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신용등급 변동,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시점의 자금조달금리, 원가요소, 마진 및 가감조정금리에 따라 대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화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상환방법별 특징



- ·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상화방법은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입니다
- 동일한 금리 한도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리금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단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환방법별 원리금 부담액 예시 (1 억원을 대출기간 5 년으로 하여 연 5%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납부 원리금은 금리적용방식, 상환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을 선택한 경우

상환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1년	1,810만원	500만원	2,310만원	8,910만원
2년	1,900만원	410만원	2,310만원	6,290만원
3년	1,995만원	315만원	2,310만원	4,295만원
4년	2,095만원	215만원	2,310만원	2,200만원
5년	2,200만원	110만원	2,310만원	0원
합계	1억원	1,550만원	11,550만원	-

- 만기 일시상환 방식을 선택한 경우

상환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1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2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3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4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5년	1억원	500만원	10,500만원	0원
합계	1억원	2,500만원	12,500만원	-

- · 상환방법 등에 따른 유의사항
-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며, 만기에 기한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이자 납부방법
- □ **만기일시상환 및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인 경우, 대출 계약 시 자동이체일(납입일)을 정하여 매월 해당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대출계약 시 선택한 입출금 계좌에 이자 또는 원리금을 입금하면 자동납부되며, 모바일앱을 통해 휴일에 상관없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 통장 대출**: 대출 계약 시 자동이체일(납입일)을 정하여 매월 해당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대출한도가 설정된 입출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하면 자동납부되며, 납부할 이자금액이 입출금계좌의 예금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대출금에서 자동 지급됩니다.
 -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경우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에 대출금액에 합산
 - ※ '매일의 잔액'의 의미 = 마감잔액 + (하루 중 최고잔액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 ※ 개시잔액과 마감잔액은 매일의 잔액을 산정하기 위해 은행이 정한 시작 및 마감 시간의 대출잔액을 말함
 -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휴일에 상관없이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납부 처리됩니다. 기타 이자납입방법은 대출거래약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가.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부담

· 연체금리는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로 적용합니다.

연체가산금리: 연3%

연체금리는 최고 연 15%로 합니다. 단, 대출금리가 연 15%보다 높을 때에는 대출금리에 연 2%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상품에 따라 연체금리가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①「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야 합니다.

②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상환대상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③ 「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④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될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잔액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하의 이익이라?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예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중 발췌)

(1)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 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등

※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자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연체이자 부담,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 를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⑤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대출 잔액에 연체금리가 적용되었을 경우, 일부 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 잔액에 연체금리가 적용**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 밖의 불이익

- · 대출 원리금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거래 제한(신용카드 정지 등) 받을 수 있고, 개인신용평점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연체정보 등록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단기연체정 보가 해제되어도 개인신용평점이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연체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 ·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최대 1년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

- ·계약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너무 길면 불필요한 이자비용 및 중도상환 시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약정한 **대출기한이 도래하면 만기일까지 전액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만기일시상환방식(마이너스 통장대출 포함)인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만기 도래 전 모바일앱을 통해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용점수 하락,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계약 연장이 거절될 수 있으며,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만기일까지 대출 잔액 및 미지급 이자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용점수 하락하거나 대출기간 중 대출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경우(마이너스 통장대출), 대출계약 연장 시 한도가 감액 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공무원대출 등 기타 협약대출 등)의 경우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계약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대출인 경우, 대출의 종료일 도래 전 기한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변경 승인 결과가 안내 되며, 변경 기간에 따라 대출금리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한은 총 대출기간 10년 이내로 늘리는 것만 가능하며, 약정 체결 시 대출기한 변경 및 대출금리가 적용 됩니다. 단, 제휴대환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 제휴·협약 상품은 기한변경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8.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 ·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 대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대출계약의 해지 시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만 부여됩니다.
- 대출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대출취소 또는 대출심사 거절 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 은행은 고객님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추론하기 위하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출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비율이 높은 경우 심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은행·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상계란 채무자와 은행이 서로에 대해 금전 채무(대출)과 채권(예금 등)을 가지는 경우,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은행은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였거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채무자가 보유한 대출과 예금 등(예금 기타의 채권)을 만기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만기가 된 예금 등과 보유한 대출을 만기 전이라도 서면통지 등의 방법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로부터의 상계의 경우, 중도상환해약금 등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체크카드 연계 계좌 마이너스 통장대출 약정 관련 안내사항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공여기간이 부여되지 않고 결제 시 결제계좌에서 이용금액이 바로 출금처리 됩니다.
-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이용할 경우 예금잔액이 부족하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대출로 결제금액이 지급되고 대출사용에 따른 이자가 발생됩니다.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 변경 대상 상품 여부 : □ 대상 □ 비대상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유선상담을 통해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변경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
- ☞ (변경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
- ☞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담보 대출 등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의 경우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재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유선상담을 통해 변경 신청이 필요하며, 접수 후 은행이 정한 일정 기간 내에 미납된 이자 및 원금에 대해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채무조정요청권

- 채무조정요청권 대상 상품 여부 : □ 대상 □ 비대상
- 채무자는 실직, 폐업, 질병으로 인해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곤란한 경우,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채무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상환능력 심사결과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대해 채무자에게 곧 통보합니다.

☞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담보 대출 등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의 경우 채무조정요청권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무조정요청권

- 채무조정요청권 대상 상품 여부 : □ 대상 □ 비대상
- 채무자는 실직, 폐업, 질병으로 인해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곤란한 경우,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채무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상환능력 심사결과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대해 채무자에게 곧 통보합니다.

· 채무지정권(변제 채무 순서 지정)

- 상환 또는 상계해야 할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로서, 보유하신 예치금으로 채무전액을 없애기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인 고객이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채무를 상환 또는 상계하기로 합니다.
- 단,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 대신 기한미도래 채무 또는 무담보 채무 대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것일 때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은행이 상환 또는 상계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이자, 지연배상금 및 비용(약정이자, 중도상환해약금, 부대비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신청금액, 신용도,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토스뱅크 개인여신스쿼드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661-765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tossbank.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